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6. 19.(금) 14: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8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28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29-14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국민생활 밀접분야인 알뜰폰 오프라인 영업점 및 통신사 온라인 영업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대상은 알뜰폰 영업점 12개사 및 통신사 영업점 19개사 등 총 31개사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명칭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테크노통신·씨엠은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수집한 이름, 전화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각각 30건, 161건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위반에 해당이 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크노통신과 씨엠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각각 30건과 161건을 수집·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씨엠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에도 작년 5월부터 수집한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833건에 대해 이용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계속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되며, 작년 5월부터 그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舊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위반사업자인 테크노통신과 씨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장조사 당시에 암호화와 개인정보 일체를 즉시 파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23조의2, 그리고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테크노통신과 씨엠은 종업원 2명 이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 기업인 점과 국민생활 밀접분야인 영업점의 실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기획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다만 향후 위반행위가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 행정처분을 하고 하반기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영업점 현황과 피심인의 제출의견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는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엇그제 언론을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작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처 간에 협의해서 마련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자세한 내용을 위원회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방통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홍보뿐만 아니라 오늘 안건과 같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자부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는 주로 실태점검이나 교육을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내지 제재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제재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벌써 여러 차례 오늘과 같은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반하는 내용들을 보면 심플하거나 초보적인 위반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사회가 대형사고가 안나

면 잠잠한데,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형태의 법규 위반사례가 있는지를 봐서, 이런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또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한 방통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정명령 중에서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중에 교육실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해야 할 대상이 개인정보취급자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실무자만 교육시키고 마는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일단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지만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직원이나 대표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표자들에게 교육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작은 업체인 경우에는 실무자들만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직위라고 할까, 책임자로 임원 이상으로 하든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대상자를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또 해당 기업들의 직원이 2명,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포함해서 교육을 받도

록...

○ 김재홍 상임위원

- 임원 이상 책임자라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직원이 2명, 6명이면 '임원 이상'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2명, 6명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시정명령 즉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이라 한다면 그쪽에서 누가 교육대상자라는 것을 정해서 읍니까? 어떻게 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대책에 교육대상을 명시해서 가지고 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표현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또 '임원'이라는 표현도 이상하니까 나중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왔을 때 '대표자도 포함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2명이든 6명이든 대표자가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씨엠에 대해서 '대표자 및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실시결과', 이렇게 대표자를 먼저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장에 가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시정명령을 지금 김재홍 위원님과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테크노통신 및 씨엠에 대해 대표자를 포함하여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실시결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알뜰폰 영업점 12개사, 통신사 영업점 19개사, 이렇게 총 31개사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지역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4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31개사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2개 사업장에서 위반한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위반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태를 보고 느끼셨을 텐데, 다들 소규모이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례들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난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획조사도 마찬가지로었는데, 관련된 해당 서버나 PC를 다 조사해 봤는데도 상당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통신사 본부에서 개인정보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기획조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거기에는 자진신고도 있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는 검·경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문, 방송의 언론보도나 국회 등을 통해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러한 것 없이 저희들이 특정 목적, 또는 배경 하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조사를 기획조사라고 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이번 대상자가 워낙 영세한 기업, 사업체여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와서 국가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들 깊이 깨닫고, 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는 위치 정보든 뭐든 간에, 또 이번에 위치정보법도 개정돼서 임원에서도 임직원까지, 물론 직원은 제한을 해서 위치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만, 법도 자꾸 그렇게 강화시켜서 개인정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에 종업원이 2명, 6명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명 같으면 그분들이 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 시킨다면 철저하게 전부 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치정보든 뭐든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암호화를 하지 않은 것이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암호화하지 않은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도 같은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수도 같은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요. 건수도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건이야 30건, 161건으로 해서 문제가 큰 것은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름, 전화번호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정조치에 대해서 ‘테크노통신 및 씨엠에 대해 대표자를 포함하여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 실시결과’, 이렇게 대표자를 집어넣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인용한 방송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대상이 되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대상 범위를 다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14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63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의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나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자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2014년 월 290만원에서 ‘15년 월 485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밑에 <표>와 <그림>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향의 사유로는 현행 수신료 면제 대상인 수급자 기준은 최저생계비 163만원, 즉 중위소득 40%이므로,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를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월 290만원에서 월 485만원으로 완화되었는데 그 완화로 면제대상 가구가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에서 규정한 것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법령 개정 전과 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방향에 대해 KBS는 수신료 면제 대상 선정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로 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KBS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손실, 약 25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온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복지부에 6월 19일까지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하게 되고,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KBS 측의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신료 손실이 약 25억원이 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을 조정해서 이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권이 전적으로 방통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야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이에 대해서는 재정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직은 이에 대해서 확정된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직 검토하지 않았네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되지요.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사실 징수율을 결정하는 것은 각 회사의 개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고 드리고 안전을 올리려고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타당성이 있는 요청인 것 같으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가 연고권을 행사해서라도 논의해서 보전할 수 있으면 보전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총량제 시행은 8월 말 정도부터 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총량제 시행이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아마 8월 말부터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쯤 되면 KBS의 재정상태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수신료 인상은 아직 봐야 할 것입니다. 거의 새로운 손실로 25억원 가량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취지가, 방송정책국에서는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많이 파악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에는, 2페이지 밑에 수신료의 경우를 <표>로 알기 쉽게 보여주긴 했지만, 각 부처의 69개 법령에서 수급대상자를 늘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사실상 맞춤형 복지이고 또한 복지의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일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단일한 기준에 맞는, 딱 그것만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해서 중위소득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들에 따라 맞춰서 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바뀐에 따라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의 복지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수급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복지부가 이 법을 개정했다고 생각하고….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만약에 69개 시행령에서 우리 같으면 KBS의 수신료, 미래부 같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 요금감면 이런 식으로 적어도 69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됐든, KBS는 다르지만, 이런 기관들이 혜택을 주는 것을 더 늘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을 늘리는 취지가 아니고 민간사업자나 각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지원폭을 늘려야 하는 것이 취지인데, 만약에 KBS 의견대로 한다면 결

국에는 재정,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다른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형료를 면제한다든가 교육비, 급식비 이런 것이고, 기재부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수급자, 통일부는 사회복지 지원, 그리고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또 문체부는 예술인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이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민간보다는 정부에서, 좀 더 국고로 지원하는 부분이 확대되는 개념이어서, 이번 복지부의 법이 개정되면 국고를 많이 증액을 시켜서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래부에서 하는 통신사업자 요금감면이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미래부에 확인해 봤더니 그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사례로 든 미래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될..., 우리 같은 거꾸로지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출 예산이 꼭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과 타 부처의 경우..., 그것이 다 기금은 아닐 테고, 지금 곽진희 과장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반예산인 것 같은데, 타 부처의 경우와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 당국으로부터 별도로 예산증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방통위 예산의 재원이 되는 수입을 결국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결론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성은 있지만 KBS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비율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신료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전액 보전이 아닌 일부 보전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은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잠깐...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수신료가 자연스럽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소위 우리 사회에 복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법이 개정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것이 자동적으로 수신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복지 확대와 수신료 면제대상의 확대 개념이 과연 매칭이 잘 되는 것인지가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위함이고,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인데, 과연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지 사회로 가는 하나의 틀과 연계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사지선다형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과거에 저희가 했던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40% 이하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이번에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은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더라도 수신료 면제자는 현행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당장 수신료를 인상을 시켜야 한다는 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에서 수신료 자체를 이렇게 25억원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자연히 연계시킨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4가지의 선택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면제자 그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40%라고 하는 그 선에 맞추어서, 의료급여 기준으로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14만 명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볼 때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수신료 정책의 방향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수신료가 자연스럽게 25억원 감액이 온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자연스럽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KBS 쪽에서는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라도 이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료 면제가구를 현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또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모양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기존대로 유지하려면 면제대상을 의료급여 중에서 40% 이하까지 하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종전처럼, 비록 기초생활보장법이 고쳐졌더라도 우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90만원으로 본다고 억지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는 없고, 결국 선택은 생계급여를 택하느냐, 의료급여를 택하느냐, 주거급여를 택하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로 가게 되면 중위소득 28% 이하니까 현재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던 가구들이 새로이 수신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마 고심 끝에 의료급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도한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사실 말씀은 안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 수신료 절대 금액은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감면대상의 범위가 넓다, 이런 의견을 KBS에서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달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본 게 있습니까? 과장님!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 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논의를 복잡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부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수신료 감면대상 부분에 대해서 범위나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들까지 다 검토해서 정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수신료 면제대상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방금 보셨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이게 오늘의 주제였고, 그다음에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영업장소의 월 사용전력이 0kW인 경우에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그다음에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등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면제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손을 대야 한다면 단순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그것도 궁금한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 여쭙 봤던 것은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수신료 면제대상과 우리의 경우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쭙 봤던 것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우리나라 수신료 면제가구의 비중은 한 9.3% 정도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3% 정도에 비해 면제가구 대상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실제 수신료 요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연간 150달러 정도인데 저희는 연간 3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수신료 요금 측면에서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신료 면제가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복지 향상과 맞춤형으로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의 정부 정책 방향대로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공영방송인 KBS의 손실부분은 어떤 또 다른 형태로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방송사에 상환해 주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조실에서 검토하실 때..., 수급자 선정기준이 현재대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라고 했을 때, 최근 5년 동안 살펴보면 기준이 똑같으면서도 수신료 면제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늘었고 재작년에는 얼마 줄었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만약에 최근 5년 동안 면제금액 총액이 2억이 늘었다면 우리 기금에서 분담금을 2억만큼 깎아주고 2억이 줄어들면 2억만큼 올리고 그렇게 보전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KBS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아는데 기조실에서 검토하실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수신료 면제금액의 변동 추이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수신료에 상응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비율 하향과 관련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방송법 시행령에서 제44조제1호에 면제자의 표현을 이와 같이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 6월 16일 국회 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을 가지고 제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민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다른 그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또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오해에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미방위에서 일어난 논의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거나 박민식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첫째는 6월 2일 오후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무런 계기도 없이 돌출행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오전에 KBS 조대현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일 오전에는 EBS 사장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당초에 방송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출장 갔다 온 것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고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미 서면으로 내부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언론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자들께서 지금 이슈는 KBS 수신료 인상 건이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출입기자단의 대표성을 가진 분도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오후에 중국 출장 건과 겹들여서, 그 연속선상에서 별건으로 KBS 수신료 인상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KBS 수신료 인상안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검토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 합의제 기구의 일원인 상임위원이 개별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되느냐는 지적입니다. 저는 작년 세월호 참사 관련 재난방송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로 인한 내외의 질타, 국민들의 저항을 근거로 “이것은 사정변경이 생겼다, 재론하고 재검토할 사정변경의 원칙이 생겼다”고 이야기했고 재론해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만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재난방송 과정에서 MBC에도 문제가 있었고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만, ‘KBS 수신료’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KBS는 어땠습니까? 정부 책임을 비호하고 피해 유족들에게 불공정한, 또는 오보 방송을 해서 보도국장이 사퇴해야 했고 사장까지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3기 방통위원 우리가 오기 전에 제2기 방통위원들이 작년 1월인지, 2월인지 의결해서 보내 놓은 그 검토안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공정보도와 자율적 제작을 바탕으로 해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것을 내부에 간헐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KBS 사장과 EBS 사장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출입기자단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주장해 온 제 입장을 다시 밝힌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재난방송 이후의 상황을 바탕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재론하고 재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사실관계인데 국회 속기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KBS 수신료 인상을 지지, 찬성하는 발언을 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여당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에 오해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당 의원일 때에도, KBS 수신료 인상 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디다만, 나올 때마다 그냥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그렇게 발언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려면 내부 노조와 바깥의 시민사회가 수공할 만한 정도의 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수신료 인상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선상에서 발

언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은 오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개별적인 의견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민식 의원님 이외에 그 자리에 계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드릴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말씀 드리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수 의사에 따르겠다든지 했으면 따로 개별적인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선은 지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소수파이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비토(veto)했거나 퇴장했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상임위원으로서 저를 추천하고 뽑아준 국회와 또 저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를 생각해서라도 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날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신 부분 중에 KBS 수신료에 대해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낸 의견을 재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두 차례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KBS 이사회가 의결한 다음에 저희의 의견을 거기에 첨부해서 국회로 보내도록 하는 절차가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비록 저희와는 다른 전 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보낸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가 철회를 한다든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가 없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될 때, 그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보낸 의견을 철회한다든지 변경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다시 모아서 그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할까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그때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2기 방통위에서 했지만 연속선상에서 제3기 방통위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3기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에는 또 그 직후에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국민적 재난이 발생했고 재난방송에서 문제가 생겨 큰 홍역을 치렀으면 사정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제 논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2기에서 만들어 보낸 그 검토안에 공정보도와 자율적 제작을 전제로 했는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깨졌다는 말씀입

니다. 왜? 세월호 참사 보도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그 검토안을 철회하거나 빼기는 어려울지 모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놔두고 부가적으로라도 '제3기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미방위 법안 소위에 KBS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에 티타임이나 그런 때에 한 번 정식 논의를 하고, 이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간단히 한 말씀...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S 수신료 문제는, 저도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저는 제2기 때 제출된 의견이 아직도 적절하므로 재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통위 상임위원의 개별적인 기자회견 문제가..., 제가 미방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방통위 내에서 위원님들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도 한 번도 논의 안 된 게 국회에서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티타임에서 한 이야기를 굳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지 맙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오늘과 같은 이런 전체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이 공개되어서 찬반이나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것인데 그것을 위원 개별적으로 또 다른 기자회견과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언론에 기고도 하고 아주 단편적인 인터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을 때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결론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의논했거나 의논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 간에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상임위원들의 개별적인 언론 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그런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회 미방위에서 그날 박민식 의원님만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 계신 다른 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반박하는 반대의견, 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상임위원은 특히 소수파의 경우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그런 구조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게 되면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자리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그 선입니다. 제가 참여한 논의에서 제가 설득을 당했거나 다수 의견에 따라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퇴장했거나, 논의 자체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거부했거나 하는 것은 독립적인 상임위원으로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를 추천해서 보내 준 국회와 저를 지지하고 계신 시민사회,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 이런 공개회의 자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출장을 주말에 갔다 왔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 발생인데 그다음 주 초에는 해야 합니다. KBS 사장과 EBS 사장이 연달아서 수신료 인상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서 했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 거기에 또 입장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는데 상임위원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특수한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국회에서도 소수파, 다수파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다수파 상임위원님들은 특별히 할 필요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소수파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간단히 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개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나 기고, 그리고 강연 그다음에 SNS 이런 활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언론과 소통하고 정책고객인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자회견을 하건 기고를 하건 강연을 하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에서 논의가 덜 된 사안이나 아니면 기존에 논의했던 사안이나, 그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게 무리만 되지 않는다면 위원 개개인의 상식과 양심에 맡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으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활용에 있어서도 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제가 이기주 위원님처럼 기고는 아직 안 해 봤는데 또 필요하다면 기고도 할까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고를 고 위원님 의견대로 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넉넉하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저희 위원들끼리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6월 26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5분 폐회 】